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2년 6월 3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6월 3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창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의 실시 및 위탁(안 제6조)
-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안 제7조)
- 사업비 지원 및 업무의 위탁(안 제8조~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및 유공자 포상(안 제10조~제11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가. 제출배경

- 창업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대응,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촉진,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의 대안으로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창업에 일부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업자의 대부분이 창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장에 진입하여 창업 시 실패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경우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 64.6%에서 5년차 31.7%로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창업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3~5년 차에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y)’ 을 극복 해야되기 때문으로 나타남
- 따라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비 창업 단계부터 창업 이후까지의 전주기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 검토내용

1)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라고 예시하고 있음에 따라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5에 따른 실태조사, 제4조의7에 따른 기술창업의 활성화 등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창업기업 발굴·성장 지원을 위한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자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2020.01.09.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19.04.10.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조례	2019.10.10.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2.23.
광주광역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2020.06.01.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2018.08.10.
울산광역시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07.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11.10.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조례	2019.10.01.
강원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04.30.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20.12.31.
전라남도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020.05.21.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조례	2021.08.05.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2020.10.14.

2)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창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하여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는 실태조사의 실시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법 제4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실태조사는 창업관련 시책 개발의 기본 자료로서 충북도의 창업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7조**는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술기반창업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창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 및 활성화가 기대됨
-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임
 - 현재 우리 도 내에서는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되고 단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연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창업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창업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보여짐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창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 견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창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창업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내 창업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창업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